

부천영상 지역전략산업지원 행복주택 (부천 청년문화마을 예술인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신청자격 확대)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 04. 22.]

1. 건설위치

단지명	주 소	총세대수
부천영상 지역전략산업지원 행복주택 (청년문화마을 예술인주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7 (상동 702 일원)	850 호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천영상 지역전략산업지원 행복주택**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지원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2. 공급대상 ※ 신청 자격별 세부 요건은 공고문 본문[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고는 직전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미계약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공고이며, **‘지역전략산업종사자’에 선순위로** 공급하고, 남은 잔여세대(예비자 포함)에 대해 **후순위로 행복주택 대학생 · 청년계층에 확대하여 모집**합니다.

(선순위) 지역전략산업종사자

부천영상 지역전략산업지원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04. 22.)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 아래 가)~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19 ~39세 청년 (혼인여부 무관, 출생일 : 1985. 4. 23. ~ 2006. 4. 22.)

※ 신청자격별 세부 무주택 · 소득 · 자산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종사자	세부사항
가) 문화산업종사자 : 다음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콘텐츠산업 종사자	사업자등록증 상 주매출업종이 ‘부천시 지역전략산업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사업체 종사자 - p.31~34에서 코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문예술법인·단체 종사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 · 단체 종사자
나) 등록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 예술인	
*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서’ 상 유효기간 내여야 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아래 분야의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자(총 8개 분야에 한함)	
- 문학 / 미술(응용미술 포함)·사진·건축 / 음악·국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 / 만화분야	
다) 부천시 추천자 : 1), 2),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부천시에서 별도 모집 : 부천시청(www.bucheon.go.kr) → 부천소식 → 새소식[032)320-3000]	
1) 예비문화산업종사자 :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① 콘텐츠 및 예술 관련 학과 대학/대학원(석·박사) 재학생 - 콘텐츠 : 출판, 만화·웹툰,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 광고,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 예 술 : 음악, 문학, 미술, 사진, 연극, 무용, 실용예술(건축, 디자인, 공예, 패션, 미용) 등 ② 부천스토리텔링 아카데미 수강생 - 입주자모집공고일(‘25.04.22.) 현재 수강 중인 학생

2)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 협·단체 종사자 : ①, ②, ③, 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관내 콘텐츠·예술 관련 기관, 협·단체 종사자 - 부천문화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아트센터, 부천시립예술단,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및 산하 기관 /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종사자
	③ 등록공연장 종사자 - 「공연법」 제9조(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에 따른 등록공연장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25.04.22.) 현재 일하는 자
	④ 웹툰융합센터 입주기업 종사자 및 작가
3)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콘텐츠 및 예술 관련 분야 프리랜서

(후순위) 대학생/청년

선순위 공급 이후 남은 잔여세대(예비자 포함)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후순위로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무주택·소득·자산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청년 계층

-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10~14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의 경우,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임대조건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가 되신 분은 서류접수일정기간 내에 [6. 신청서류]를 참고하시어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 및 예비자에서 제외됩니다.

3.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금회 공급대상

공급형별		건설 호수	공가호수	금회 모집호수 (서류제출 대상자 = 당첨자 + 예비자)	세대 당 계약면적(m²)				
					주거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전용	공용	기타공용	주차장	
16A		212	159	300 (당첨자 : 159, 예비자 : 그 외)	16.98	10.3484	3.8959	9.0212	40.2455
21A		72	12	80 (당첨자 : 12, 예비자 : 그 외)	21.56	13.1397	4.9469	11.4545	51.1011
21T1/T2	T1	23	16	80 (당첨자 : 16, 예비자 : 그 외)	21.76	13.2616	4.9928	11.5607	51.5751
	T2	6			21.69	13.2189	4.9766	11.5235	51.4090
26A/B	A	77	5	200 (당첨자 : 5, 예비자 : 그 외)	26.95	16.4246	6.1836	14.3181	63.8763
	B	9			26.97	16.4368	6.1882	14.3287	63.9237
26A1/B1 (주거약자)	A1	76	85	200 (당첨자 : 85, 예비자 : 그 외)	26.95	16.4246	6.1836	14.3181	63.8763
	B1	9			26.97	16.4368	6.1882	14.3287	63.9237

※ 이 주택의 건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벽식이며, 난방은 지역난방 방식입니다.

【청약 및 입주 관련】

- 공급형별로 **한 유형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21T1/T2, 26A/B, 26A1/B1는 형 구별없이 청약 신청을 받으며, 형 구별없이 동·호를 추첨합니다.
 - 21A형(또는 21T1/T2형) 예비자 소진시 잔여세대는 21T1/T2형(또는 21A형) 예비자에게 전환 공급될 수 있습니다.
 - 26A/B형(또는 26T형) 예비자 소진시 잔여세대는 26T형(또는 26A/B형) 예비자에게 전환 공급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호수는 향후 계약해지, 주택보수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금회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주 가능하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으며, 차량가액이 기준가액을 초과할 경우 단지내 차량등록이 불가하여 단지내 주차할 수 없습니다. (차량가액은 개별 소유지분과는 무관함)
 -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미소유를 입주자격으로 하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바랍니다.

【주거약자용 주택(26A1/B1)】

- 주거약자용 주택(26A1/B1)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지역전략산업종사자 및 대학생·청년 계층 중 주거약자(주거약자의 정의는 하단의 내용 참고)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26A1/B1형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 후 **남은 잔여 세대에 대해 현재 설치된 편의시설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26A/B형 예비자에게 예비순번에 따라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예비자 선정 관련】

- 서류제출 대상자(입주자격 검증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에 대해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격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유형의 임대주택에 중복 선정은 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유형(예시)국민 ↔ 국민, 행복 ↔ 행복 등)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장기임대주택(국민·행복·영구 및 통합공공임대)에 입주 시에는 모든 예비입주자 대기명부에서 삭제**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내 설치된 빌트인 항목(주택형 무관)】

전용면적	16㎡, 21㎡	26㎡
빌트인 항목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2구형) - 냉장고 - 냉장고장 - 책상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2구형)

- 각 세대별로 전기쿡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 **가스공급 설비가 없어**, 도시가스 사용기반의 기구(가스레인지, 가스건조기 등)는 사용하지할 수 없습니다.

【공급면적 관련】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동일한 공급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2025년4월 현재 기준, 금액단위: 원)

공급 형별	공급 대상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계	계약금	잔금				
16A	지역전략산업중사자 및 청년	38,052,000	1,902,000	36,150,000	161,720	(+) 16,000,000	54,052,000	68,380
						(-) 31,000,000	7,052,000	252,130
	대학생	35,938,000	1,796,000	34,142,000	152,730	(+) 15,000,000	50,938,000	65,230
						(-) 30,000,000	5,938,000	240,230
21A	지역전략산업중사자 및 청년	48,312,000	2,415,000	45,897,000	205,320	(+) 21,000,000	69,312,000	82,820
						(-) 40,000,000	8,312,000	321,980
	대학생	45,628,000	2,281,000	43,347,000	193,910	(+) 19,000,000	64,628,000	83,070
						(-) 38,000,000	7,628,000	304,740
21T1	지역전략산업중사자 및 청년	46,908,000	2,345,000	44,563,000	199,350	(+) 20,000,000	66,908,000	82,680
						(-) 39,000,000	7,908,000	313,100
	대학생	44,302,000	2,215,000	42,087,000	188,280	(+) 19,000,000	63,302,000	77,440
						(-) 37,000,000	7,302,000	296,190
21T2	지역전략산업중사자 및 청년	46,764,000	2,338,000	44,426,000	198,740	(+) 20,000,000	66,764,000	82,070
						(-) 39,000,000	7,764,000	312,490
	대학생	44,166,000	2,208,000	41,958,000	187,700	(+) 19,000,000	63,166,000	76,860
						(-) 37,000,000	7,166,000	295,610
26A 26A1	지역전략산업중사자 및 청년	60,408,000	3,020,000	57,388,000	256,730	(+) 26,000,000	86,408,000	105,060
						(-) 50,000,000	10,408,000	402,560
	대학생	57,052,000	2,852,000	54,200,000	242,470	(+) 24,000,000	81,052,000	102,470
						(-) 47,000,000	10,052,000	379,550
26B 26B1	지역전략산업중사자 및 청년	60,444,000	3,022,000	57,422,000	256,880	(+) 26,000,000	86,444,000	105,210
						(-) 50,000,000	10,444,000	402,710
	대학생	57,086,000	2,854,000	54,232,000	242,610	(+) 24,000,000	81,086,000	102,610
						(-) 47,000,000	10,086,000	379,690
26T	지역전략산업중사자 및 청년	56,988,000	2,849,000	54,139,000	242,190	(+) 24,000,000	80,988,000	102,190
						(-) 47,000,000	9,988,000	379,270
	대학생	53,822,000	2,691,000	51,131,000	228,740	(+) 23,000,000	76,822,000	94,570
						(-) 45,000,000	8,822,000	359,990

【임대조건 및 전환보증금 제도 관련】

- 위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22.)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산정된 임대조건이 적용되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연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연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해당 임대조건은 재계약전 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하는 시기는 계약체결 이후이며, 입주 시작 전에 우리공사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환보증금을 신청하시려는 분은 계약체결 시점에는 기본 임대조건 상의 계약금은 그대로 납입하시고, 잔금 납입 시 보증금 증액 또는 감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아래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신청계층에 따라 자격검증대상이 상이하니 상세한 사항은 계층별 신청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은 행복주택에 해당함)

4-1. (선순위)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5.04.22.(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일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다음의 1) 지역전략 산업종사자 요건, 2) 소득·자산·청약자축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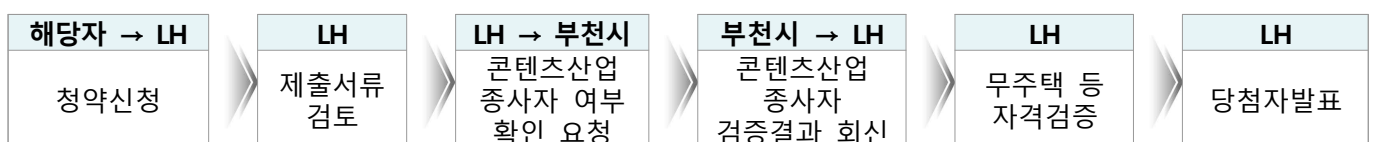
1)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25.04.22.(화)) 현재 청약신청자 본인이 아래 문화산업종사자, 등록예술인 및 부천시가 추천하는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19세 ~ 39세 이하인 청년** (출생일 : 1985. 4. 23. ~ 2006. 4. 22.)
* 혼인여부에 따라 자격검증 대상의 범위가 달라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종사자	세부사항
가) 문화산업종사자 : 다음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콘텐츠산업 종사자	사업자등록증 상 주매출업종이 '부천시 지역전략산업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사업체 종사자 - p.31~34에서 코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문예술법인·단체 종사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 종사자
나) 등록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 예술인 *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서' 상 유효기간 내여야 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아래 분야의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자(총 8개 분야에 한함) - 문학 / 미술(응용미술 포함)·사진·건축 / 음악·국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 / 만화분야	
다) 부천시 추천자 : 1), 2),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부천시에서 별도 모집 : 부천시청(www.bucheon.go.kr) → 부천소식 → 새소식[032)320-3000]	
1) 예비문화산업종사자 :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① 콘텐츠 및 예술 관련 학과 대학/대학원(석·박사) 재학생 - 콘텐츠 : 출판, 만화·웹툰,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 광고,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 예 술 : 음악, 문학, 미술, 사진, 연극, 무용, 실용예술(건축, 디자인, 공예, 패션, 미용) 등
	② 부천스토리텔링 아카데미 수강생 - 입주자모집공고일('25.04.22.) 현재 수강 중인 학생
2)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 협·단체 종사자 : ①, ②, ③, 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관내 콘텐츠·예술 관련 기관, 협·단체 종사자 - 부천문화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아트센터, 부천시립예술단,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및 산하 기관 /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종사자
	③ 등록공연장 종사자 - 「공연법」 제9조(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에 따른 등록공연장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25.04.22.) 현재 일하는 자
	④ 웹툰융합센터 입주기업 종사자 및 작가
3)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콘텐츠 및 예술 관련 분야 프리랜서

【문화산업종사자 중 콘텐츠산업 종사자 해당여부 확인 관련】

- 문화산업종사자 중 콘텐츠산업 종사자는 **LH에 청약신청을 하고 그 신청자를 대상으로 부천시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해당자격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032-320-3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검증 절차



【부천시가 추천하는 자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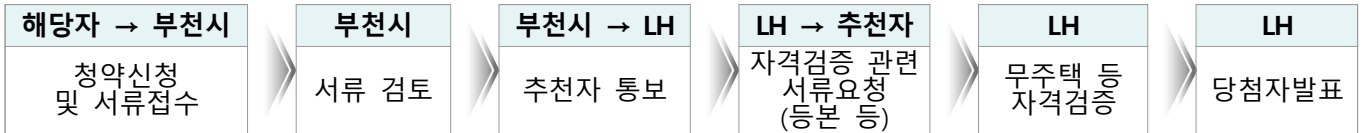
- '부천시가 추천하는 자'는 '25.04.22.(화) 부천시가 별도 공고하여 청약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격 및 서류제출 등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부천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천시 홈페이지 : www.bucheon.go.kr

- 부천시 문의처 : ☎ 032) 320-3000

• '부천시가 추천하는 자'로 신청하신 분도 무주택·소득·자산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자격검증 절차**(「15. 부천시 지역전략산업 분류코드」 참고)



【문화산업종사자 중 전문예술법인·단체종사자 및 등록예술인 관련】

• 전문예술법인·단체종사자 및 등록예술인 자격으로 신청하시는 분은 청약접수 및 서류검토, 자격검증 모두 LH 공사가 진행합니다.

【자격검증 기관】

구 분	해당 종사자	자격별 검증기관	
		종사자 여부	주택·소득·자산 자동차 등
문화산업종사자	1) 콘텐츠산업 종사자	부천시 콘텐츠관광과	LH
	2) 전문예술법인·단체 종사자	LH	
등록 예술인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 예술인	LH	
부천시 추천자	1) 예비문화산업종사자	부천시 콘텐츠관광과	
	2)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 협·단체 종사자		
	3)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2) 소득·자산 및 청약저축 가입 관련 요건

- 아래의 소득·자산 및 청약저축요건(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및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맞벌이 2인가구인 경우에는 13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일반		맞벌이 부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4,317,797원 이하	120%		
2인	6,024,703원 이하	110%	7,120,104원 이하	130%
3인	7,626,973원 이하	100%	9,152,368원 이하	120%
4인	8,578,088원 이하	100%	10,293,706원 이하	120%
5인	9,031,048원 이하	100%	10,837,258원 이하	120%
6인	9,733,086원 이하	100%	11,679,703원 이하	12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3,7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803만원 이하**일 것

③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해당 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함

•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됩니다.

【자격 검증 대상】

공급신청자 구분	주택소유여부 검증 시	월평균소득, 가구원수,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혼인중이 아닌 경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혼인중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순위 및 입주자 선정기준】

1순위	신청자 본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가 부천시 인 자
2순위	제1순위 외의 자

• (경쟁시 입주자선정 기준) 순위 → 추천

4-2. (후순위) 대학생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22.)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 (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신청자의 부모와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4,317,797원 이하	120%
2인	6,024,703원 이하	110%
3인	7,626,973원 이하	100%
4인	8,578,088원 이하	100%
5인	9,031,048원 이하	100%
6인	9,733,086원 이하	10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이 10,4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부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순위 및 입주자 선정기준]

1순위	부천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경기도(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이외 지역)가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경쟁시 입주자선정 기준) 순위 → 추천
-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천합니다.

4-3. (후순위) 청년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22.)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 (청년은 ①-㉓와 ②~⑤, 사회초년생은 ①-④와 ②~⑤)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㉓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 1985. 4. 23. ~ 2006. 4. 22.)

①-④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4,317,797원 이하	120%
	2인	6,024,703원 이하	110%
	3인	7,626,973원 이하	100%
	4인	8,578,088원 이하	100%
	5인	9,031,048원 이하	100%
	6인	9,733,086원 이하	100%
세대원(본인)	1인	4,317,797원 이하	12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5,4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803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을 적용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①-④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①-④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①-④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구분	해당세대 범위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순위 및 입주자 선정기준】

1순위	부천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 경기도(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이외 지역)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시 입주자선정 기준) 순위 → 추첨

•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합니다.

4-4. 주거약자 (26A1/B1 형)

입주자 모집공고일('25.04.22.(화)) 현재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청년, 대학생 중 하나의 자격요건을 충족 하면서 주거약자(장애인 등)에 해당하시는 분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 장애인 등 주거약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상의 안전기준과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여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아래와 같은 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 1) 미끄럼방지 마감재, 2) 동체감지기, 3) 바닥단차 완화(3cm 이하), 4) 안전손잡이(현관, 좌변기, 욕조)
- 5) 욕실통로센서등, 6) 높낮이 조절 샤워기, 7) 욕조 높이 조절(45cm 이하), 8) 비상연락장치(거실, 욕실, 침실)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주거약자’ 범위 (발체)

-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④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근거

※ 이 주택은 19~39세의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주택으로, 「관련법령」 상의 주거약자 중 고령자(65세 이상인 사람)는 위에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주거약자	선순위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순위 → 배점 → 추첨
	후순위	대학생/청년	순위 → 추첨

- 순위는 일반공급과 동일하며,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합니다.

【배점 -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 주거약자】

구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 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인 이상	2인	1인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부천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③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p.27~30 「14. 장애인의 장애정도 구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5. 신청자격 세대구성원 범위 참고)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에 한함

5.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 공급일정

신청접수 (인터넷 PC/모바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발표	계약체결
(인터넷 PC/모바일 청약신청) '25.05.12(월) 10:00 ~'25.05.16(금) 16:00 (현장대행접수) '25.05.14. (수) 10:00~16:00 (점심시간 12~13시제외) ※ 현장접수장소 LH 인천지역본부	'25.05.29.(목) 17:00 이후 (확인방법)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클릭	'25.06.02.(월) ~ '25.06.09.(월) ※ 우편접수 (등기우편 발송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서비스팀 부천영상 행복주택 담당자 * 신청접수번호를 필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25.06.09.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	'25.09.17.(수) 17:00 이후 (확인방법)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상단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클릭 또는 ARS(1661-7700)	'25.09.30(화) ~ '25.10.02(목) ※ 전자계약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인터넷 및 모바일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일시에 LH 인천지역본부(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 방문하시면 현장 대행접수 가능합니다.([6.신청서류] 참고, 서류 미지참시 접수 불가)
-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시 등기우편송부하여야 합니다.
(우편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 LH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서비스팀 부천영상 행복주택 담당자 앞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경(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 '부천시가 추천하는 자' 는 '25.04.22(화) 부천시에서 별도 공고하여 모집합니다. 부천시청 사이트(www.bucheon.go.kr) 에서 해당 공고를 확인하신 후 기한 내 부천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PC) 신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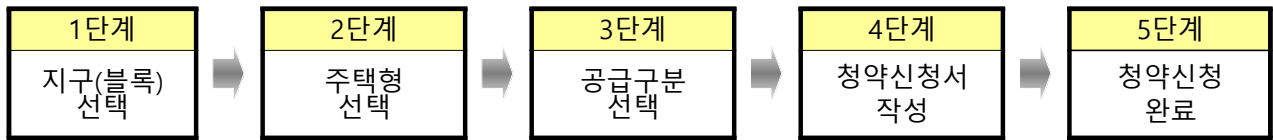
- * 청약방법 :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 앱 ("LH 청약플러스"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기타사항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5.05.12 10:00시부터 '25.05.16 16:00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5.05.12 10:00시부터 '25.05.16 16:00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청약 방법

- 현장 신청자(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 지정된 일시에 접수장소로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일 등 모집일정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공급대상자에 따라 「6. 신청서류」의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현장접수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같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논현동 639-1번지)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25.5.29.(목) 17:00**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P C : LH청약플러스 → 『청약』 클릭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등기우편 접수**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 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논현동) LH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서비스팀 부천영상 행복주택 담당자 앞**
- **현장 신청자**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현장 접수자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서류제출을 같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6. 신청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 조건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본인이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직접 확인하신 후 제출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심사서류 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탈락처리 됩니다.
- 발급받아 제출하시는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5.04.22.(화))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 PC 또는 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시,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돌려드리지 않으며,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될 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구 분		내 용
지역전략산업종사자	문화산업종사자 및 등록예술인	- 일반주택 : 아래 ① + ②에 해당하는 서류 - 주거약자용 주택(26A1/B1형) : 아래 ① + ② + ③에 해당하는 서류
	부천시 추천자	- 일반주택 : 아래 ①에 해당하는 서류 - 주거약자용 주택(26A1/B1형) :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서류
대학생/청년		- 일반주택 : ① + ④에 해당하는 서류 - 주거약자용 주택 : ① + ③ + ④에 해당하는 서류

① 기본 제출서류

구비서류	내 용
【필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양식1)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자필서명
【필수】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2)	· (동의방법) 공고 시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자필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가 거부됩니다.

구비서류	내 용
【필수】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양식3)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LH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필수】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양식4)	· 내용 확인 후, 신청자가 자필서명하여 제출 - 동의서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거부됩니다.
【필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표기)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주민등록표 상 배우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상세로 발급)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 거주자로서, 부천시에 서의 '계속 거주기간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추가 제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중 배점의 부양가족수에 태아(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②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제출서류 (선순위)

구 분	해당 종사자	제출서류	내 용	발급처
문화산업 종사자	1) 콘텐츠산업 종사자	① 재직증명서	- 공고일 현재 재직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해당 직장
		②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각 보험 가입일부터 발급일까지 '전체 내역'으로 발급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③ 사업자등록증	- 공고일 현재 재직중인 지역전략산업 사업장의 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제출)	해당 직장
	2) 전문예술법인·단체 종사자	① 재직증명서	- 공고일 현재 재직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해당 직장
		②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각 보험 가입일부터 발급일까지 '전체 내역'으로 발급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③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	- 공고일 현재 종사중인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서류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제출)	해당 직장
등록 예술인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 예술인	① 재직증명서	- 공고일 현재 재직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해당 직장
		②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각 보험 가입일부터 발급일까지 '전체 내역'으로 발급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③ 예술활동증명서	-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부천시 추천자’의 자격관련 서류는 청약신청 시 부천시로 제출하여 심사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제출서류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행정복지센터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청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12.7.1이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④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④ 대학생/청년 계층 제출서류 (후순위)

공급대상	구비서류	발급처
대 학생 계층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대학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 사실 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행정복지센터
청년 계층	청년 (19세 이상 ~ 39세 이하)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발급)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사람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직장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사람 중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경우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연구기관, 기관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경우 : 복무확인서(복무 중인 경우) 또는 병적증명서(복무완료인 경우)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2025.09.17.(수) 17:00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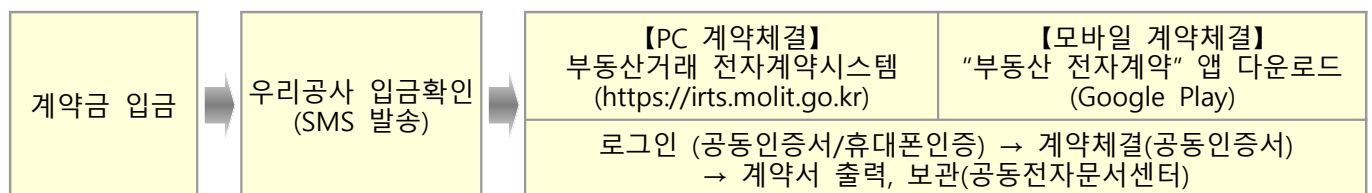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공급형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 계약안내

○ 전자계약 [25.09.30.(화) 10:00 ~ 10.02.(목) 16: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계약체결 절차】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됩니다.**

-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SMS는 신청접수 시 "SMS 수신동의"한 신청자에 한하여 발송하고, 수신동의하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저장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전자계약이 불가능하오니 사전에 문의(☎032-890-524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8.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구분		산정방법
기타 자산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 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교통부 차적정보

9.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입주자격</th><th>최대 거주기간</th></tr> </thead> <tbody> <tr> <td>대학생/청년 계층</td><td>10년</td></tr> <tr> <td>지역전략산업종사자</td><td>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td></tr> </tbody> </table> -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단, 소득·자산 등 기준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청년 계층	10년	지역전략산업종사자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청년 계층	10년						
지역전략산업종사자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예비입주자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 미통보에 따른 손해 책임은 공사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 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5년의 경우 3,803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 차량의 개별 소유지분과는 무관함)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미소유를 입주자격으로 하며, 자동차가액 산출 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바랍니다.														
갱신계약 등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입주 후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1회 재계약 허용 후 다음 회차 갱신시에 최초 종사자 자격 미충족 시 갱신계약은 불가하나, 종사자 자격을 회복했을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table><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tr><th>최초 갱신계약 시</th><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tr><tr><td>10% 이하</td><td>110%</td><td>120%</td></tr><tr><td>10% 초과 30% 이하</td><td>120%</td><td>130%</td></tr><tr><td>30% 초과</td><td>130%</td><td>140%</td></tr></table>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 이하	110%	120%	10% 초과 30% 이하	120%	130%	30% 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 이하	110%	120%													
10% 초과 30% 이하	120%	130%													
30% 초과	130%	140%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인 경우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배우자 포함)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기타사항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 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또는 계약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 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관계기관에 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등이 달라지므로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해당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계약자를 대상으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10. 지구·단지 및 세대 내부여건

구 분	내 용
지구여건	•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단지 주변시설 및 구조물(보도, 버스 환승차로, 변압기, 버스정류장, 지하철 정류장 등)계획을 확인 후 계약에 응해야 하며, 주변시설물 및 구조물로 인한 소음, 미관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지 요구 등 우리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은 해당관청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는 행복주택 외 웹툰융합센터(업무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구 인근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해당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여건	• 해당단지는 기 준공된 단지로, 현재 상태로 공급하며,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습니다. (당첨 동호 세대 방문 일정은 당첨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예정이며, 시설물 변경 및 추가 요구는 불가함) ① 공통사항 • 지상 1층 남측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외에는 지상차량 출입이 불가합니다. • 야외 우수배관(재질:스테인레스)이 지상 1층 건물벽을 따라 바닥까지 노출됩니다. • 1층 상가를 포함한 시설물별 지상 출입구 및 각동 사이 1층 지상 보행로에 배수트렌치 및 시각장애인 유도블럭이 설치됩니다.

구 분	내 용
	• 외부와 단지경계를 구분하는 별도의 울타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이 단지는 지하 3층(기계실,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1층~지하3층(지하주차장, 주택, 업무시설), 지상1층~지상3층(부대시설, 판매시설, 지역편의시설), 지상4층~25층(주택 : 101동), 지상2층~25층(주택 : 102동) 행복주택 2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붕은 전체 동에 평지붕으로 설치되었고,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 구조로 시공하였습니다. • 아파트 복도 외부 면으로 일부 창호가 설치되며, 방충망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는 아파트의 101동, 102동 옥상 및 지하주차장 중계기실에 설치되어 있고, 이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층에 위성안테나 및 헬리포트(102동), 전 동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불편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팸플릿 및 현장 방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 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천장 일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내 지상도로(차도)가 없으며, 이사 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하므로 이사집 운반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 주차가능 차량수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및 웹툰융합센터 모두 합쳐 전체 518대입니다. - 아파트 : 총 367대[지상1층 4대(장애인 주차 1대 포함), 지하1층~3층 363대(장애인 주차 8대포함)] - 근린생활시설 : 총 4대[지상1층 4대(장애인주차 1대 포함)] - 웹툰융합센터 : 총 147대[장애인주차 3대 포함] • 단지 내 자동차 출입구는 2개소(지상1개소, 지하1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1층 주차장은 웹툰융합센터용으로 147대, 아파트용으로 37대가 주차할 수 있으며, 별도의 주차 관제시설이 설치되어 웹툰융합센터와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 전기차 충전기는 주택용 지하주차장에 급속충전기 1개소, 완속충전기 3개소(지하1층) 설치되며, 스마트 충전기는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중 지하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2.3m이며 내부 주차 공간 높이는 2.1m입니다.(단, 조업을 위한 지하1층 출입구 및 분리수거장 조업차량 동선구간의 차로 높이 2.7m) • 특고압이 지하1층 주차장 천장을 횡단하여 지하3층 전기실로 인입되어 있습니다. • 이사차량은 지하1층 차로만 통행 가능하며, 진입 후 지하1층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사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랜치의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단지 배치 상 동별 주차대수, 동 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이 균등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대는 단지 전체 법정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단지 분산 설치되나, 동별로 동일한 수량이 동일한 위치에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물 수취함 및 무인택배보관함은 1층에 배치되어 설치됩니다. • 단지 내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공동현관 등에 CCTV가 설치됩니다. • 경비실은 101동 1개소, 102동 1개소로 각각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 101동, 102동과 웹툰융합센터는 2층에 연결통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본 단지의 입주자는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고, 공동시설과 관련된 집기류 및 운영비용 등은 내에서 제공하거나 부담하지 않습니다. • 재활용보관소는 지상1층 주차장 램프 입구 우측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거리가 먼 세대의 경우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웹툰동 지상1층 북측에 위치한 재활용보관소는 부천시(관련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라 입주민 사

구 분	내 용
	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1층에 폐기물 보관창고, 분리수거장이 설치되며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창고가 설치되어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설들은 부천시 관련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라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이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② 일조권 · 조망권 · 사생활 침해 등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보안등·가로등·공원등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및 전조등으로 인해 저층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 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및 지상 PIT층은 소방법규에 따라 출입구가 점검구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의 외부 또는 2층,3층에 에어컨 및 냉·난방기 실외기가 설치되어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102동(근생4) 및 웹툰동(근생10) 인근에 상가시설 가스공급을 위한 유해시설(LPG시설)이 설치되오니 설치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3층에는 전기실/발전기실, 기계실(열교환실),지하저수조에 집수정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외부인입 개폐기(한국전력)는 웹툰동 북측과 101동 서측 사이 지상 1층에 배치되며, 주변은 조경식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02동 2층, 3층 세대는 층고가 높아 타 층의 세대보다 천장고가 높을 수 있으며, 실외기실에 천장 설치로 인해 스프링클러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01동 지상1층에는 어린이집 및 근린생활시설(상가), 지상2층~3층 주민공동시설, 101동 지상2층~3층 지역편의시설, 102동 지상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상가), 지상2층~3층 주민공동시설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및 102동 1층, 2층 야외시설(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과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냄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에 인접한 세대는 추후 입점 되는 영업업종에 따라 음식냄새 및 소음으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및 상가의 에어컨 설치(실외기 등)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층~3층에 위치한 주민공동시설 실외기에서 소음, 불쾌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환풍이 설치되며 환풍 상부(옥외공간)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 · 먼지 ·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여건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세대 가스공급 설비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가스레인지, 가스건조기 등 도시가스 사용기반의 기구 사용이 불가합니다. (각 세대별로 전기쿡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6A타입 세대 내부에는 세탁실 공간이 없습니다. 101동 2층에 공용세탁실이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관계기관의 운영방침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16A타입, 21A타입, 21T1타입은 고정되지 않은 이동식 책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주거약자 세대의 현관마루귀틀 단차는 30mm이고, 해당 세대에는 욕실입구 미서기문, 양변기 안전손잡이, 샤워기에 접이식 의자와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주거약자 세대의 해당 층 복도 벽체에는 주거약자용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6A타입, 36T타입, 44A타입, 44B타입 세대의 복도에 면한 침실 창에는 방범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전 세대 외부에 면한 확장 및 비확장 발코니창의 하부는 입면분할창이 설치되며, 상부에는 슬라 이딩 창으로 방충망이 설치됩니다. - 세대 간 칸막이는 경량벽으로 콘센트 등 전기, 설비 배관 및 관련 마감재는 노출 시공되어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발코니 PVC 입상배관(우수, 에어컨 배수)은 보의 간섭으로 위치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11.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 '19. 12. 31. 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부 문	내 용	적용여부	비 고
건축 부문	단열조치 준수	적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용	
	방습층 설치	적용	
기계부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적용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	미적용	해당없음(지역난방)
	고효율 전동기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적용	
	절수형 설비 설치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전기부문	수변전 설비 설치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적용	
	조명설치	적용	

12.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회사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부천영상 지역전략산업지원 행복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신공영(주) [114-81-04605] • 이수건설(주)[206-81-40054] • 주식회사 삼흥전력[417-81-05901] • (주)이든정보통신[128-81-71030]	-	(주)상우엔지니어링

13.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노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주거약자 전체
	조명밝기 600 ~ 900룩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동체감지기 설치(동작 On/Off 선택 가능)	청각장애인 전체세대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주거약자 전체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주거약자 전체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 ~ 400룩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 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 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편의시설 및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 ▶ 기 입주단지이므로 장애 정도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및 가족) 확인서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4.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 가. 청력을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생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7. 자폐성장래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5. 부천시 지역전략산업 분류코드

- 부천시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해당 여부는 **부천시에서 검증**합니다.
- 부천시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여부는 청약신청자가 재직중인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상 주매출 업종이 아래 「콘텐츠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KSIC 10차(통계청-통계분류포털-경제-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코드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검증 관련 문의 : 부천시 [032) 320-3000]

■ 부천시 지역전략산업 분류 요약

연번	콘텐츠산업 분류명 (부천시 지역전략산업 분류)	연번	콘텐츠산업 분류명 (부천시 지역전략산업 분류)	연번	콘텐츠산업 분류명 (부천시 지역전략산업 분류)
1	출판산업	5	게임산업	9	캐릭터산업
2	만화산업	6	애니메이션 산업	10	지식정보산업
3	음악산업	7	방송산업	11	콘텐츠솔루션산업
4	영화산업	8	광고산업	12	공연산업

■ 부천시 지역전략산업 분류코드 세부 항목

연번	콘텐츠산업 분류명 (부천시 지역전략산업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항목
1	출판산업		
	일반 서적 출판업(종이매체 출판업)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58111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신문 발행업	58121	신문 발행업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58122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58123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인쇄업	18111	경 인쇄업
		18113	오프셋 인쇄업
		18119	기타 인쇄업
	서적 및 잡지류 도매업	46453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도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47611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계약배달 판매업(신문배달판매)	47992	계약배달 판매업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제작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인터넷서점(만화제외)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서적 임대업(만화제외)	76291	서적 임대업
2	만화산업		
	만화 출판사(만화잡지, 일일만화, 코믹스 등)	58112	만화 출판업
	일반 출판사(만화부문)	58112	만화 출판업
	인터넷/모바일 만화 콘텐츠 제작 및 제공(CP)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인터넷 만화콘텐츠 서비스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모바일 만화콘텐츠 서비스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만화임대(만화방, 만화카페 등)	76291	서적 임대업
	서적임대(대여) (만화부문)	76291	서적 임대업
	만화 서적 및 잡지류 도매	46453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도매업
	만화 서적 및 잡지류 소매	47611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인터넷 서점(만화부문)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3	음악산업		

연번	콘텐츠산업 분류명	한국표준산업분류	
	(부천시 지역전략산업 분류)	분류코드	항목
	음악 기획 및 제작업	5920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음반(음원) 녹음시설 운영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음반 복제업	18200	기록매체 복제업
	음반 배급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음반 도매업	46461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음반 소매업	47620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인터넷 음반 소매업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모바일 음악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인터넷 음악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음원 대리 중개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CP)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90191	공연 기획업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4	영화산업		
	영화 기획 및 제작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수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영화제작 지원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극장 상영	59141	영화관 운영업
	영화 홍보 및 마케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영화투자 조합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DVD/VHS 제작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DVD/VHS 도매	46461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DVD/VHS 소매(온라인 포함)	47620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DVD/VHS 대여	76220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DVD/VHS 상영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온라인 상영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5	게임산업		
	게임 기획 및 제작업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게임 배급업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91222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91221	전자 게임장 운영업
	게임기 도소매업	46463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47640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게임 소프트웨어 도소매업	46510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4731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게임기 임대업	76220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게임 소프트웨어 임대업	7621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6	애니메이션산업		
	애니메이션 창작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하청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온라인(인터넷·모바일) 애니메이션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연번	콘텐츠산업 분류명	한국표준산업분류	
	(부천시 지역전략산업 분류)	분류코드	항목
	애니메이션 유통, 배급 및 홍보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온라인 애니메이션 서비스업(인터넷, 모바일)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7	방송산업		
	지상파 방송사업자	60100	라디오 방송업
		60210	지상파 방송업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	60100	라디오 방송업
		60210	지상파 방송업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60222	유선 방송업
	중계유선방송 사업자	60222	유선 방송업
	음악유선방송 사업자	60222	유선 방송업
	일반위성방송 사업자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47919	기타 통신 판매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전광판방송 사업자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방송영상독립제작사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인터넷방송영상물 서비스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12	전기 통신업
	인터넷 TV 방송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12	전기 통신업
	인터넷프로토콜TV(IPTV)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12	전기 통신업
	방송영상물 배급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방송영상물 중개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기타 방송영상물 서비스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방송영상산업 직능단체	94110	산업 단체
	방송영상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85709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8	광고산업		
	광고대행·매체대행	71310	광고 대행업
	광고기획·전략대행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CM·영상·카피·그래픽 제작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온라인 제작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광고사진 스튜디오	733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CI(Commercial Identity) 제작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마케팅·리서치	71400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PR(Public Relations)	71532	공공관계 서비스업
	SP(Sales Promotion)	71310	광고 대행업
	이벤트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공간 디자인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인쇄	1811	인쇄업
	제판	18121	제판 및 조판업
	광고대행	71310	광고 대행업
	매체대행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광고기획·전략대행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광고제작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연번	콘텐츠산업 분류명	한국표준산업분류	
	(부천시 지역전략산업 분류)	분류코드	항목
	광고물 기획·편집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기타(장비취급 등)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9	캐릭터산업		
	캐릭터 개발 및 라이선스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캐릭터상품 제조업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캐릭터상품 도매업	46417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46452	문구용품, 회화용품, 사무용품 도매업
		46463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캐릭터상품 소매업	47422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47612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47640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캐릭터 놀이시설 운영업	91229	기타 오락장 운영업
	인터넷 및 모바일 캐릭터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10	지식정보산업		
	e-learning 기획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e-learning 인터넷/모바일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인터넷/모바일 e-learning 제작 및 제공업(CP)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에듀테인먼트 기획 및 제작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기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스크린골프 시스템 기획 및 제작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스크린골프장 운영업	91136	골프 연습장 운영업
	기타 가상세계 및 가상현실 기획 및 제작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기타 가상세계 및 가상현실 서비스업	912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11	콘텐츠솔루션산업		
	저작물		
	콘텐츠보호		
	모바일솔루션		
	과금/결제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콘텐츠관리시스템(CMS)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기타 콘텐츠 솔루션		
	컴퓨터그래픽스(CG) 제작업		
12	공연산업		
	공연기획 및 제작업	90121	연극단체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90123	기타 공연단체
		90131	공연 예술가
		90132	비공연 예술가
	공연시설 운영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75121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매니저업	73901	매니저업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문의처	부천시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평일 09:00 ~ 18:00)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및 '부천시 추천자' 문의	
	LH	전화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 1600-1004 (평일 09:00 ~ 18:00)
		인터넷	-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당첨자 ARS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인터넷 청약	· PC :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접수·계약처 약도	 - 지하철 : 수인선 호구포역 2번 출구 (도보 5분) - 버 스 : 20번, 20A번, 38번, 3-2번, 103-1번 (논현3단지하늘마을 또는 인천남동우체국 하차)		
도로명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4. 22.

